

국내 플랜트 공사에서의 물가변동제도 개선 방안

이 원 용 / 대우건설
pc48@dwconst.co.kr

1. 서론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은 지금까지 주로 토목, 건축공사를 근간으로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전체 건설업에서 토목, 건축공사가 큰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플랜트 건설공사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발주형태도 기존의 시공위주의 발주에서 설계, 기자재구매, 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턴키발주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플랜트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 특성에 맞도록 물가변동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업무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품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 보완을 통해 정당한 대가 지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종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 물가변동제도를 검토하여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에 맞는 물가변동제도의 개선방향을 위해서는 공사발주 방식에 따른 산정 기준일의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법의 이원화가 요구됨은 물론 조정을 산정시 이용하는 지수를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함으로서 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랜트 건설공사에서 철강재(철판, 배관자재, 철근 및 펌프류등) 및 주요 기자재의 가격 상승은 공사 원가의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인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는 불

가피한 것이다. 또한 목적물의 품질 확보 문제, 건설업체의 부실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과거의 상황에서 경험하였다. 그런데 철강재 등 건설자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계약 금액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 제도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매우 경직되고 실물경제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발주공사 중 대형공사의 발주방식이 최저가낙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적자 시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사비에 영향이 큰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건설업체로서는 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행 국가계약법 등의 물가변동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물가변동제도의 분석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대로 건설업자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채무를 지고, 발주자는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지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어 성립되게 된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사자에 불리한 사정

이 발생한다 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서도 계약 이행의 확실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계약은 확정 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 도급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므로 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나 물가의 극심한 등락 등 경제여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산정당시와 그 후의 물가변동은 계약당사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발주자는 공사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발주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의 변동시가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이와 같은 추가부담요인을 모두 예상하여 금액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당초 계약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상대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확정된 계약금액과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에서는 사법상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 개념으로서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정부계약제도에서는 계약내용을 전제로 미리 정해진 계약예정가격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에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상대자 일방에 불공

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3. 현행 물가변동제도의 문제점

3.1 산정기준일 적용상의 문제점

현행 국가계약법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발주방식은 크게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과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발주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물가변동 제도의 적용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은 입찰자가 단일사업자 또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79조는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계약금액 결정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발주자는 목적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략공사비 산출을 통한 예산을 편성 후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과 지침을 근거로 계약목적물의 성능을 보장하는 최선의 기본설계를 통해 입찰금액을 산출하여 입찰일에 입찰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검토하여 당해 목적물에 적합한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수행한다.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또한 입찰공고시점을 ‘청약’, 입찰을 ‘승낙’의 개념으로 보아 실질적인 계약일이라 할 수 있는 ‘입찰일’을 물가변동 기준으로 개정된 현재의 국가계약법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일부의 의견은 입찰공고일을 물가변동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동등한 계약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추정가능한 시점인 입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은 발주자가 설계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해당목적물에 적합한 설계를 완성한 후, 입찰과정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완성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계약금액 결정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에서 발주자는 설계사에서 작성한 설계서를 근거로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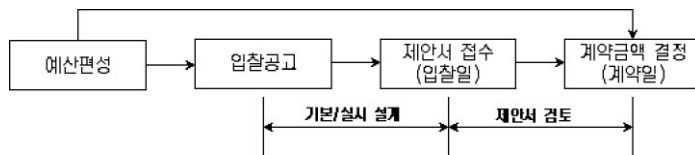
(회계예규 2200-04-160, 2005.12.30)”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시방서, 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며 다른 발주방식과 비교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서의 변경은 불가하다.

대부분의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최종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반하여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낙찰자를 판단한다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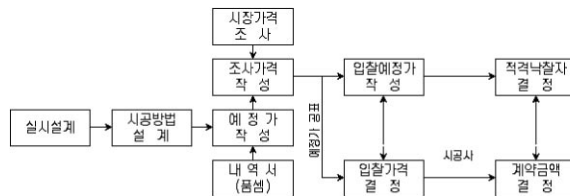
국가계약법에 기초한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에 기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은 가격외에 공사수행능력, 과거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선정은 당해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표 1**에 따라 당해공사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그림 1]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계약금액 결정 프로세스



[그림 2]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계약금액 결정 프로세스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을 평가하여 산출한 점수와 입찰자의 가격이 예정가격의 88%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표 1을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가격의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억원이상인 공사 : $30 - |(a-b) \times 100|$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50 - 2 \times |(a-b) \times 100|$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70 - 4 \times |(a-b) \times 100|$
 -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일반) : $80 - 20 \times |(a-b) \times 100|$
 - 3억원미만인 공사 : $90 - 20 \times |(a-b) \times 100|$
- ※ (a-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현행의 입찰제도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발주자가 산출하는 예정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사규모별 예상낙찰율 하한선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초로 입찰자의 가격점수가 산출되는 현행 입찰제도하에서는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격이 최근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물가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가격 산정 시점과 입찰공고 시점과의 차이가 커 두 시점사이의 시장

<표 1>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심사분야		일반공사						
		1000억원이상	1000~500억원	500~100억원 ※	100~50억원	50~10억원	10~3억원	3억원미만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시공경험	14	13	12	15	15	10	-
	기술능력	12	12	12	-	-	-	-
	시공평가결과	2	2	2				
	경영상태	12	13	14	15	15	10	10
	신인도	(±1.2)	(±1.2)	(±1.2)	(±1.2)	-	-	특별(+2)
	소계	40	40	40	30	30	20	10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10	12점 (300억원이상 10점)	10	-	-	-
	자재·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16	16	14점 (300억원이상 16점)	10	-	-	-
	시공여유율	4	4	4	-	-	-	-
	설계 평가	-	-	-	-	-	-	-
	소계	30	30	30	20	-	-	-
수행능력 계	70	70	70	50	30	20	10	
입찰가격	30	30	30	50	70	80	90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10)	(-10)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에도 예정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입찰제도에서는 예정가격 산출에 대한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산출된 예정가격의 적정성, 시장가격의 반영 여부 등을 판단할 방법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공사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감시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2 조정을 산출방법 적용의 경직성

현행 국가계약법상에서 조정을 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수조정률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물가변동 제도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 건축 등 단일공종의 공사를 기준으로 정착된 제도로서, 대형화되고 복합공종(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계장, 기계설비 등)으로 구성된 플랜트 건설공사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플랜트 건설사업의 특성

플랜트 건설사업은 사업주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중간재 또는 최종 제품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플랜트 건설사업의 특성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라는 점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 그리고 일반 건설과는 달리 기술경쟁력과 기자재 구입비용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되며,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이 있다.

플랜트 건설사업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복합장치산업이다. 플랜트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다양한 기술이 총집결되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며 수많은 개별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복합장치산업으로 고도의 품질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일반건설사업이 범용성 있는 자재구매와 시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플랜트 건설사업은 표 3과 같이 설계, 구매, 기자재 구매, 시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자재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

〈표 2〉 공사규모별 예상낙찰율 하한선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기준		지재및인력조달평가 상향 추정치	예상낙찰율
	낙찰하한율	통과점수		
1000억원이상 (최저가대상 제외)	72.995%	85점	2 ~ 5%	75 ~ 78%
1000억원 ~ 300억원이상 (최저가대상 제외)	77.995%	90점	2 ~ 4.5%	80 ~ 83%
300억원 ~ 100억원이상	82.995%	95점	1 ~ 3%	84 ~ 86%
100억원 ~ 50억원이상	85.495%	95점	0.3 ~ 1%	85.8 ~ 86%
50억원 ~ 10억원이상 (전기, 정보, 소방 3억원이상, 전문 1억원이상)	86.745%	95점	-	86.75%
10억원 ~ 3억원이상 (일반건설공사)	87.745%	95점	-	87.75%
3억원미만 (전문 1억원미만)	87.745%	95점	-	87.75%

하고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당해 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제품 사양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생산되어지는 주문제작품으로서 제품생산이 가능한 생산업체도 제한적이며, 특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춘 제한적인 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다.

(2) 조정률 산출방법 적용의 경직성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선택시 해당공사의 공기, 규모, 공종 구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조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편의 위주의 지수 조정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정금액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플랜트공사에서 지수조정률을 선호하는 이유는 조정률 산정의 편리성을 들 수가 있다. 품목조정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변경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변동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수행능력이 부족한 내적인 요인과 조정률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여 비경제적이며, 공사계약 체결 시 내역서상의 단가산출 기준이 불명확한 관계로 비교시점에서 적용할 단가기준이 애매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반건설업의 주요 품목의 경우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물품의 가격이

공인된 물가정보지 등에 등재되어 있어 품목 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적은 반면, 플랜트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자재의 가격은 업체의 가격 견적서에 의존하는 관계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물가변동의 근거가 되는 기자재 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아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토목공사에서는 플랜트공사와 비교해 품목조정방식의 이용이 다소 높은데 그 이유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과 내역서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물가정보지등에서 월별로 가격 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품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 산정이 용이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4. 플랜트공사에 적합한 개선방안

4.1 산정기준일의 합리화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입찰공고, 입찰일까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그 기간이 현행 물가변동 기간요건인 90일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입찰일을 물가변동 산정 기준일로 적

〈표 3〉 플랜트건설과 일반건설 비교

구 분	플랜트 건설	일반 건설
사업 형태	• 설계, 구매, 시공부문이 일차적으로 수행되며 고도의 기술 및 사업관리 기법 필요	• 범용성 자재 구매 및 시공부문 수행
사업 영역	• 공장 설비 분야 (석유화학, 정유, 가스플랜트, 발전, 일반 산업설비, 환경설비 등)	• 토목 / 건축 분야 (도로, 교량, 주택 등)
발주 형태	•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등의 일괄 발주 • F/S, Financing 등의 포괄적인 수행 경향	•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 • 설계사와 시공사의 책임 및 성능보장이 이원화
원가 구성	설계 : █ 10~15% 구매 : █ 50~60% 시공 : █ 20~30% • 경쟁요소 : E/P/C 복합	설계 : █ 5%이하 구매 : █ 20~30% 시공 : █ 60~70% • 경쟁요소 : 시공



용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리스크 부담을 계약 상대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행 물가변동 산정 기준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에 물가변동 기준일을 입찰일로 규정한 현재의 기준이 합리적일 것이나,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공사 계약금액은 설계완료시점과 입찰공고일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산정기준일은 현행 “입찰일”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설계완료 후 예정가격 산정이 완료된 시점과 입찰공고일 시점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기존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감안하여, 특약조건으로 발주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설계완료시점과 입찰공고시점이 장기화 될 경우(90일 이상) 입찰공고 이전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신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격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조정률 산정 방법의 이원화

현행 물가변동제도에서는 조정률 산출방법을 품목조정률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시 지수조정률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일공사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품목조정방식이 실제 발생된 물가변동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사내역서가 방대하고 공사 공종이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플랜트 건설공사에서는 과도한 물가변동 업무를 고려하고 발주자와 산정기준의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지수조정률을 이용하고 있

으나 이로 인해 실거래가격의 변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플랜트 건설공사비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기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고 주요 기자재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률 산정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플랜트 건설공사의 조정률 산정방법을 이원화 할 경우 많은 품목수로 인해 적용을 꺼려하던 품목조정방식을 주요기자재에 적용하고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품목에 품목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조정률 산정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투입되는 인력이 과다한 단점을 보완하고, 모든 품목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플랜트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기자재의 가격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요 기자재에 대한 품목조정률 적용시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적용방법, 공사별 주요 기자재의 범위, 기준가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나 계약시에 명확히 하여 공사수행 중 혼란을 방지하고 임의 적용을 통한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3 등락률 산정 기초자료의 현실화

현행 물가변동제도는 등락율의 산정 방식으로 지수조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노임지수는 건설 부문의 노임이 조사되어 발표되고 있으나, 건설자재 부문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는 플랜트 건설자재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수가 아니며, 전자제품이나 일반 소비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평균 물가지수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투입되는 자재의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수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제도 도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플랜트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건설공사비의 상승요인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랜트 건설공사에서 적용하는 자재만을 위해 물가지수를 조사하고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정보지를 보면, 실거래가격이 아닌 생산자공표가격이 게재된 사례가 많아 실거래가격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며, 등록된 품목이 실제 플랜트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실거래가격이 게재되는 품목일지라도 갱신주기가 1개월로 되어 있으나, 시중 가격이 반영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랜트 건설공사에서 주로 적용하는 자재물가지수 조사 및 공표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한 후, 이러한 자재에 대하여는 실거래가격을 월별로 파악하여 자재물가지수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노임지수도 현재는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는 최소 90일이 지나면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6개월 단위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체제하에서는 건설노임의 조사 및 발표주기를 최소 3개월로 줄이고, 더 나아가 건설업의 주요 직종만을 대상으로 월별 조사를 실시하여 월별 노임지수를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노임지수는 지역의 구분 없이 단일 노임을 발표하고 있으나, 최근의 노동시장을 분석해보면 특정지역의 노사분규로 인해 그 지역의 노임이 전체 노임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노임지수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최근 국내 플랜트 건설시장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가입찰제도의 확산으로 건설공사비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변동의 발생은 플랜트 건설공사비의 증감을 초래하고 비합리적인 조정금액 산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의 금전적인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거나 계약관계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건설분쟁이나 도산의 위험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고에서는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제도를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법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보완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발주 방식에 따른 산정기준일의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공사 계약금액은 설계완료시점과 입찰공고일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산정기준일은 현행 “입찰일”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방법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실제 변동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고 기타자재를 포함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률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실 가격의 반영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정률 산정시 사용하는 지수를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에 맞는 항목을 기준으로한 지수의 조사 및 발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물가변동제도가 플랜트 건설공사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및 학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KIEPC)